



경기도의회 제391회(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경기도지사 (이민사회국)

2026. 6. 10.(수)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목 차

I . 제안경위	2
II . 개요	2
III . 검토의견	4
1. 일반회계	4
2. 주민참여예산 결산 주민의견서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경기도지사
2. 제출연월일 : 2026. 5. 29.
3. 회부연월일 : 2026. 6. 1.

II.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 결산

※ 결산개요서 7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미수납액(B-C)
이 민 사 회 국	7,855,717	7,851,456	7,848,122	3,334
세 외 수 입	248,245	243,984	240,650	0
보 조 금	7,607,472	7,607,472	7,607,472	0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0	0	0	0
이 민 사 회 정 책 과	13,243	13,299	13,299	0
세 외 수 입	13,243	13,299	13,299	0
이 민 사 회 지 원 과	7,842,474	7,838,157	7,834,823	3,334
세 외 수 입	235,002	230,685	227,351	3,334
보 조 금	7,607,472	7,607,472	7,607,472	0

나. 세출 결산

※ 결산개요서 7쪽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 [A - B - C]	집행률 (B/A)
이 민 사 회 국	18,508,987	18,051,655	401,647	55,685	97.5%
이민사회정책과	3,071,336	2,635,540	401,647	34,149	85.8%
이민사회지원과	15,437,651	15,416,115	0	21,536	99.9%

- 주요 불용사업 내역(30% 이상 또는 1억 이상 불용 사업)
 - 3건 17,270천원 ※ 결산개요서 10쪽
- 예산의 변경(이용·전용·변경·이체 사용) : 변경 1건 50,000천원
 - ※ 결산개요서 10쪽
- 계속비 집행 : 해당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1건 401,647천원 ※ 결산개요서 11쪽
- 예비비 결산 : 해당없음
- 성인지 결산
 - 부서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수 (개)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집행률
이 민 사 회 국	4개	1,299,981	1,290,381	9,600	99.3%
이민사회정책과	1개	97,000	94,900	2,100	97.8%
이민사회지원과	3개	1,202,981	1,195,481	7,500	99.4%

-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수 (개)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집행률	
이 민 사 회 국	4개	1,299,981	1,290,381	9,600	99.3%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 계	1개	792,044	792,044	0	100%
	이민사회정책과	0	0	0	0	0
성별영향 평가사업	소 계	1개	792,044	792,044	0	100%
	이민사회지원과	1개	792,044	792,044	0	1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1개	193,350	185,850	7,500	96.1%
	이민사회정책과	0	0	0	0	0
기타사업	소 계	1개	193,350	185,850	7,500	96.1%
	이민사회지원과	1개	193,350	185,850	7,500	96.1%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1개	97,000	94,900	2,100	97.8%
	이민사회정책과	1개	97,000	94,900	2,100	97.8%
기타사업	소 계	0	0	0	0	0
	이민사회지원과	0	0	0	0	0
기타사업	소 계	1개	217,587	217,587	0	100%
	이민사회정책과	0	0	0	0	0
기타사업	소 계	1개	217,587	217,587	0	100%
	이민사회지원과	1개	217,587	217,587	0	100%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미수납액(B-C)
이민사회국	7,855,717	7,851,456	7,848,122	3,334
세 외 수 입	248,245	243,984	240,650	3,334
국 고 보 조 금	7,607,472	7,607,472	7,607,472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

- (세입총괄) 2025년도 이민사회국 소관의 세입예산 현액은 78억 5,571만원 이고, 실제 징수결정된 78억 5,145만원 가운데 78억 4,812만원이 수납되어 333만원이 미수납되었음.

《미수납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과목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이 민 사 회 국	2건	0	3,334	
이민사회지원과	기타이자수입	0	516	시군 이자발생액 납부 지연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0	2,818	시군 집행잔액 납부 지연

- (시군집행잔액 징수율 제고 필요) 미수납항목을 살펴보면, 이민사회지원과 소관 시군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33만원이 미수납됨.
 - 시군집행잔액은 조기에 납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며, 시군별 체납 징수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세출결산

2025회계연도 결산 비교 : 道 일반회계 VS 이민사회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C)	불용액 [D=A-B-C]	불용률
道 일반회계	39,286,755,913	38,713,407,992	98.5%	399,177,575	174,170,346	0.4%
이민사회국	18,508	18,051	97.5%	401	55	2.5%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 [A-B-C]	집행률 (B/A)
이민사회국	18,508,987	18,051,655	401,647	55,685	97.5%
이민사회정책과	3,071,336	2,635,540	401,647	34,149	85.8%
이민사회지원과	15,437,651	15,416,115	0	21,536	99.9%

- (세출총괄) 2025년도 이민사회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85억 898만원이고, 이 중 180억 5,165만원을 지출(97.5%)되고
 - 불용액은 5,568만원(2.5%)으로, 예산집행률은 道 일반회계 집행률(98.5%)보다 낮게 나타남.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결산 개요서)	사업명 (부기명)	실집행기관 (통계목)	예산액(A)	교부액(B) (道→기관)	실집행액(C) (기관)	불용액 (A-C)	불용사유 (이민사회국 직접작성)
이민사회국 소계		3개	29,670	5,289	12,400	17,270	
이민사회정책과		1개	13,500	-	7,111	6,389	
10 쪽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자체/직접) (이민사회정책 활성화 업무추진)	경기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3,500	-	7,111	6,389	집행잔액

부서명 (결산 개요서)	사업명 (부기명)	실집행기관 (통계목)	예산액(A)	교부액(B) (道→기관)	실집행액(C) (기관)	불용액 (A-C)	불용사유 (이민사회국 직접작성)
이민사회지원과		2개	16,170	5,289	5,289	10,881	
10 쪽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자체 / 지원) (폭력피해이주 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4개 시군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0,770	3,489	3,489	7,281	3개 시군 인건비 예산으로 지급하여 불용액 발생
10 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비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 (자체 /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비 지원 사업)	1개 시군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5,400	1,800	1,800	3,600	2개시군 (부천,고양)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 (불용규모 축소필요) 이민사회국 소관 사업 중 불용액 3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3개 사업에서 1,727만원이 발생됨

- 예산은 사전에 추정하여 편성되므로 상황 변화 등으로 일부 불용은 불가피 하나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집행부 스스로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향후 예산 편성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은 조기에 구조조정하거나 감액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관리 노력이 필요함.

○ 주요 불용사업을 살펴보면,

- ① 이민사회지원과 소관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사업은 72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해 3개 시군 인건비 예산으로 지급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불용사유를 제출함
 -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시군별 집행방식과 자원 부담 구조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향후에는 시군별 인건비 지급 체계와 실제 소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중복 편성이나 불필요한 예산 사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 중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조기 감액 등 세출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예산변경 타당성 검토) 예산 변경사용 ※ 이용, 전용, 이체 없음.
 - 예산은 사전 추계방식에 의해 편성·집행되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은 불가피하고, 이에 신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변경 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 25년도에는 1개 사업에서 5,000만원이 변경되어 집행됨.

① 변경 : 1건 50백만원

- (변경)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1건 5,000만원이 변경되었음.

《변경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A)	전용액(B)		전용후 예산(A±B)	전용일자 / 내용
				감액	증액		
1건			50,000	△50,000	50,000	50,000	
이민사회정책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교류 사업(자체/직접)	사무관리비	50,000	△50,000	0	0	당초 정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이민정책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에 따라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교류 사업(자체/직접)	행사운영비	0	0	50,000	50,000	행사운영비로 변경

- ①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교류 사업은 당초 정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이민정책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에 따라 예산 전액인 5,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임.
 - 이민사회 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전액을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른 행사성 경비로 변경한 것은 사업 추진 방향이 예산 편성 이후 크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행사 추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편성 단계부터 적정 통계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 변경 사용이 사업계획 변경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목적과 집행계획의 정합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명시이월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결산 개요서)	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B)	이월액 (A-B)	이월사유
이 민 사 회 정 책 과		974,000	924,703	572,353	401,647	
11쪽	경기도 외국인주민 포털 (자 체 / 직 접) 구축	974,000	924,703	572,353	401,647	○ 집행시기 미도래 - 사업기간 : '25.1월 ~ '26.5월 -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주민 및 자원기관 - 이월사유 : 집행시기미도래 - 추진실적(계획) · '25.10.15 : 계약체결 · '25.11.17 : 착수보고회 · '26.2.23 : 중간보고회 · '26.6월 : 잔금 집행 및 포털 준공 후 서비스 개통

- 동 사업은 도내 외국인주민 생활 전반 다국어 민원·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계획 상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일부인 4억164만원이 이월된 사업임.
- '26년 6월 중 사업 완료예정으로, 포털 구축 사업은 단순 개통 여부보다 실제 이용 편의성, 정보의 정확성, 다국어 번역 품질, 지속적인 콘텐츠 현행화 체계가 중요함. 개통 이후에도 이용률, 민원 처리 연계 실적, 언어별 접근성 등을 지속 관리해야 할 것임. 아울러 포털 구축 후 운영·유지관리 예산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일회성 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성인지 결산》 ※ 결산서 첨부서류[2] 937~948쪽

○ (성인지결산) 2025년 성인지 예산은 4개 사업 12억 9,998만원을 편성하여 99.3%인 12억 9,038만원을 집행하였음.

◆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으로 편성해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회계법 제18조에 의해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토록 명시하고 있음

《성인지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수 (개)	예산현액(A)	지출액(B)	불용액(A-B)	집행률 (A/B)
일반회계 (이민사회국)		4	1,299,981	1,290,381	9,600	99.3%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	792,044	792,044	0	100%
	성별영향 평가사업	1	193,350	185,850	7,500	96.1%
	자치단체 특화사업	1	97,000	94,900	2,100	97.8%
	기타사업	1	217,587	217,587	0	100%

- 집행률 등 지표상으로 성인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지원사업에서 목표달성이 미달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성인지 결산 사업 현황》

부서명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이민사회정책과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운영	SNS콘텐츠 생산건수	900건	1,890건	달성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참여자 만족도	93점	93점	달성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문화체험소통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27%	27%	달성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피해자 평균보호 인원	36명	29명	미달

2. 주민참여예산 결산 주민의견서 ※ 주민의견서 61쪽

- 경기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이에 따라, 이민사회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비 지원사업 등 1개 사업 540만원에 대한 주민의견서와 이에 대한 부서의견을 제출하였음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5년도 최종예산	주민의견	비고
1	이민사회 지원과	다 문화 가 족 지 원 센 터 전 문 상 담 비 지 원 사 업 (자 체 / 지 원) (주민참여예산)	5,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다문화가족 대상 야간·주말 상담 운영은 적절하였고 안산시 사례를 통해 정책 수요와 사업 효과가 확인됨 ○ 일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집행률이 낮은점은 한계이며, 고도화된 심리검사 진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지역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집행 및 환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음. 이번 결산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은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관련 부서의 적극적 검토와 제도 개선이 요구됨.